의 안 번 호	제 968 호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

의결사항

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발 의 자	심상동 의원 외 9명
발의연월일	2021. 5. 11.

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의안번호	제 968 호

발의연월일 : 2021. 5. 11.

발 의 자 : 심상동・김경영・김일수
김진옥・박문철・빈지태
윤성미・이영실・정동영
황보길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 제2항 및 「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」 제73조 제1항에 따라 도정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경상남도지사,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○ 출석기간 :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기간

○ 출석대상 : 도지사·교육감 및 도정질문과 관련되는 「경상남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관계공무원

○ 출석이유 :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

3. 관련법규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 제2항

○ 「경상남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 제2조

○ 「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」 제73조 제1항

【 관 련 법 규 】

□ 지방자치법

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· 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·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경상남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
제2조(범위) 경상남도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부지사, 부교육감
2.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장 · 국장 · 본부장 · 단장 · 담당관 및 과장급
3. 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소속 행정기관장
4. 제3호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도 본청 실 ·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
5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
6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하급 교육행정기관장(교육장)
7. 제5호의 교육기관 및 제6호의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도 교육청 실 ·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

□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

제73조(도지사 등의 출석요구)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